

#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--

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8호

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현재 서울시교육청은 ‘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지원

청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교육장,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개정안은 현재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함으로써 서울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본 개정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